

안양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

제정 1999. 6. 14 조례 제1639호
일부개정 2009. 8. 3 조례 제2180호
일부개정 2010. 11. 8 조례 제2278호
전부개정 2018. 11. 16 조례 제2985호(제명개정)
일부개정 2019. 5. 10 조례 제3059호
일부개정 2020. 7. 10 조례 제3213호(안양시 위원회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)
일부개정 2021. 4. 8 조례 제3304호
일부개정 2021. 11. 11 조례 제3372호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안양시의회의 입법 또는 법률사안의 전문적 자문을 위하여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직무) ① 안양시의회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의 입법고문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.

1. 자치법규의 제·개정에 관한 입안사안의 자문
2. 의회 관련 입법정책에 관한 자문
3. 의회운영 및 의안 심사·처리와 의회 운영사항에 관한 자문
4. 그 밖의 주요 부의안건 심사에 관한 자문

② 의회의 법률고문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. <개정 2021. 4. 8>

1. 의회 안건처리 등 업무관련 법령 해석에 관한 자문
2.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과 의안심의 시 자문
3. 의회가 당사자가 되는 소송수행에 관한 자문
4. 안양시의회 의장(이하 “의장”이라 한다)이 위임한 의회 관련 쟁송사건의 소송수행
5. 그 밖에 의장이 자문을 의뢰한 법률사항

③ 입법 및 법률고문은 직무 관련 강의를 할 수 있으며,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 된다. <개정 2021. 4. 8>

④ 법률고문은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3조(위촉)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3명이내의 입법 및 법률고문

을 위촉할 수 있다.

1. 입법고문은 입법분야에 전문지식과 경륜을 갖추고 해당분야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

2. 법률고문은 개업 중인 변호사

② 법률고문은 안양시 고문변호사직을 겸할 수 없다.

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하는 입법 및 법률고문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의 승낙서를 받은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.

제4조(위촉 해제) 의장은 입법 및 법률고문이 임기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. <개정 2021. 4. 8>

1.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

2. 정당한 이유 없이 자문 또는 소송수행을 기피하거나 소홀한 경우

3.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한 경우

4.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

5. 불성실한 자문으로 의회 및 안양시의회 의원(이하 “의원”이라 한다)의 정활동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

6. 그 밖에 의장이 위촉 해제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

제5조(임기) 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위촉할 수 있다. 다만, 임기가 만료되어도 의회로부터 수임하여 수행 중인 소송은 종료 시까지 수행하여야 한다.

제6조(자문 요청 등) ① 의원 또는 의회사무국 직원은 제2조의 자문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소속위원회의 전문위원 또는 의회사무국 직원의 지원을 받아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. <개정 2021. 4. 8>

② 의장은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자문기록부를 비치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. <개정 2021. 4. 8>

제7조(회의) ① 의장은 입법 또는 법률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입법 및 법률고문이 참가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.

② 회의에 참석한 입법 및 법률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8조(자문수당) 입법 및 법률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30만원의 수당을

지급한다.

[전문개정 2021. 4. 8]

제9조(소송비용 등) 법률고문이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과 관련하여 수입한 소송사건에 대한 소송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「안양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」를 준용하여 지급한다.

[본조신설 2021. 4. 8]

제10조(의원 변호비용 지원) ① 의장은 소속 의원이 정당한 의정활동과 관련하여 민·형사 사건의 당사자가 되어 변호사를 소송대리인(고소대리를 포함한다)으로 선임하는 경우에는 제11조에 따른 소송비지원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변호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 <개정 2021. 4. 8, 2021. 11. 11>

② 제1항에 따른 변호비용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은 의정활동에 한하여 지원한다. <개정 2021. 4. 8>

1. 본회의

2.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

3. 그 밖에 의정활동 범위에 포함된다고 의장이 인정하는 경우

③ 제1항에 따른 변호비용 지원범위는 총 1천만원까지로 하며 변호비용을 지원받은 의원은 시의회 법률고문에게 사건을 위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④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받은 변호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하여야 한다.

1. 법원의 확정판결로 청구원인 사실이 의원 개인의 위법행위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: 전부

2. 법원의 판결 및 결정으로 소송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 경우: 일부

[본조신설 2019. 5. 10]

[중전 제9조에서 이동 2021. 4. 8]

제11조(소송심의위원회) ① 제10조에 따른 의원의 변호비용 지원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안양시의회 소송비지원 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한다. <개정 2021. 4. 8>

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
1. 소송비 지원 여부 검토

2. 소송비 환수에 대한 검토

3. 그 밖에 소송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의장이 위원회에 회부한 사항

[본조신설 2019. 5. 10]

[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21. 4. 8]

제12조(위원회의 구성 등)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③ 위원은 상임위원장과 입법 및 법률고문으로 구성하며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.

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⑤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일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·의결에서 제척된다.

⑥ 민간위원이 심의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「안양시 위원회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 <개정 2020. 7. 10>

⑦ 위원장은 심의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, 관련자 등에게 의견을 듣거나, 증거 등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

[본조신설 2019. 5. 10]

[종전 제11조에서 이동 2021. 4. 8]

부칙 <2018. 11. 16 조례 제2985호 전부개정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「안양시의회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위촉된 고문변호사는 이 조례에 따라 법률고문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.

부칙 <2019. 5. 10 조례 제3059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20. 7. 10 조례 제3213호, 안양시 위원회 수당 등의
지급에 관한 조례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 부터 ⑧5 까지 생략

⑧6 안양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제6항 중 “안양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”를 “안양시 위원회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”로 한다.

부칙 <2021. 4. 8 조례 제3304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21. 11. 11 조례 제3372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지 제1호서식]

승 낙 서

본인은 「안양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」가 정하는 바에
따라 안양시의회 입법(법률)고문 위촉을 승낙합니다.

년 월 일

직위
성명 (인)

안양시의회의장 귀하

[별지 제2호서식]

위 축 장

직위

성명

귀하를 「안양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」가 정하는 바에
따라 안양시의회 입법(법률)고문으로 위촉합니다.

(위촉기간: 년 월 일 ~ 년 월 일)

년 월 일

안양시의회 의장 (직인)

[별지 제3호서식] <개정 2021. 4. 8>

자 문 기 록 부

자 문 사 항				회 신 결 과		
연월일	자문방법	의뢰인	의뢰내용	연월일	고문인	회신내용

※ 자문방법에는 서면, 전화, 전자우편, 모사전송(FAX) 등 기재

※ 의뢰내용 및 회신내용은 필요시 별지작성 가능